2023학년도 제7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 **개최일시 :** 2024. 1. 17.(수) 14:00~15:00
□ **장　　소 :** 감사회의실(A407-1호)
□ **평의원회 참석현황**

참석의원	7명	김향수(부의장), 윤영걸, 조민호, 조남호, 맹선향, 강승욱, 황규빈
불참의원	6명	이홍찬(의장), 서영교, 고민호, 정연서, 이종진, 문찬

□ **개회선언 · 성원보고**
○ 평의원 총 13명 중 7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어 2023학년도 제7차 대학평의원회 개회를 선언함.

□ **회의안건 및 결과**
○ 중원대학교 학칙 개정(안) 심의 : 수정 후 통과

□ **회의내용**
○ 학사팀장 : 학칙 개정(안)에 대해 설명

○ 의원 : 제76조의 개정사항은 1항과 2항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것으로 보이며 1항에서 원칙을 정하였는데 2항에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 제시

○ 학사팀장 : 제76조 1항에서 정한 원칙은 있으나 2항에서 별도의 세부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임을 설명

○ 부의장 : 제76조 1항과 2항의 내용을 하나의 내용으로 연결하여 표기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학칙 개정(안)은 수정 후 통과하는 것에 대해 동의 여부 확인

○ 출석의원 전원 동의

○ 제76조의 개정사항은 수정
○ 수정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학평의원회 심의결과
제76조(교원의 책임시수) ① 교원의 책임시수는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12시수를 원칙	**제76조(교원의 책임시수)** ① 교원의 책임시수는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12시수를 원칙	**제76조(교원의 책임시수)** ① 교원의 책임시수는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12시수를 원칙

현 행	개 정 안	대학평의원회 심의결과
으로 한다. ② 교원의 책임시수 세부기준은 「학사운영규정」에 정한다.	으로 한다. ② 교원의 책임시수 세부기준은 「교원업적평가 규정」에 정한다.	으로 하되, 세부기준은 「교원업적평가 규정」에서 정한다. ② <삭제>

□ **폐회**

○ 위 내용에 출석 위원 전원 동의하고 회의를 마침

□ 2023학년도 제7차 대학평의원회 회의 참석자 서명
- 개최일시 : 2024. 1. 17. 14:00~15:00

의 장	이홍찬	(인)
부의장	김향수	(인)
평의원	윤영걸	(인)
평의원	조민호	(인)
평의원	서영교	(인)
평의원	고민호	(인)
평의원	조남호	(인)
평의원	맹선향	(인)
평의원	강승욱	(인)
평의원	정연서	(인)
평의원	이종진	(인)
평의원	황규빈	(인)
평의원	문 찬	(인)